
「2024년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」 시행지침

2024. 2.



국립종자원
종자산업지원과

세부사업명	품종심사 및 재배시험					세목	민간경상보조	
내역사업명	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					예산 (백만원)	7,362	
사업목적	국내채종 지원 확대를 통한 국내채종기반 강화 및 안정적인 종자공급 체계를 구축하고, 해외채종에 따른 유전자원(원종 등)의 유출을 예방·방지							
사업 주요내용	국내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 구매 대금의 50%를 종자업체에 지원							
근거법령	종자산업법 제10조(재정 및 금융 지원 등), 같은 법 제11조(중소 종자 업체 및 중소육묘업자에 대한 지원)							
지원자격 및 요건	-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중 종자업(채소)을 3년 이상 영위한 자 * 단,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- 신청품종은 품종보호출원(또는 품종보호등록)품종 또는 생산판매신고 품종이어야 함(단, 수출전용품종은 예외)							
사업 신청	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에 신청 - 신청시기·방법 : 당해연도 3월, 방문신청, 우편, e메일							
지원대상 선정	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신청요건, 구비서류, 사업비(예산)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							
재원구성 (%)	국고	50%	지방비	-	융자	-	자부담	50%
연도별 재정투입 현황	(단위 : 백만원)							
	구 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
	합 계	6,726	8,326	10,970	14,724	13,924	14,724	
	국 고	3,363	4,163	5,485	7,362	6,962	7,362	
	자부담	3,363	4,163	5,485	7,362	6,962	7,362	
담당기관		담당과			담당자		연락처	
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		종자산업지원과			소은희 연구관 양누리 주무관		054-912-0160 054-912-0162	

① 본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입니다.

1. 사업대상자

-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한 국내 종자업체(국내법인이 있는 외국계 종자업체 포함)

2. 지원자격

-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 등록자 중 종자업(채소)을 3년 이상 영위한 자
 - 단,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

3. 지원대상 작물 및 신청요건

- 지원대상 : 채소 전 작물(옥수수, 들깨, 참깨, 강낭콩 포함)
 - ※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만 해당(종구 생산은 제외)
- 신청요건 : 신청품종은 국내육성 품종으로 품종보호출원, 품종보호등록, 생산 판매신고 품종 중의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
 - 단, 수출전용품종의 경우 수출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품종보호출원 (또는 품종보호 등록) 또는 생산판매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함
 - ※ 국내·외국업체가 외국에서 육성된 품종을 단순 국내 위탁채종하는 품종은 제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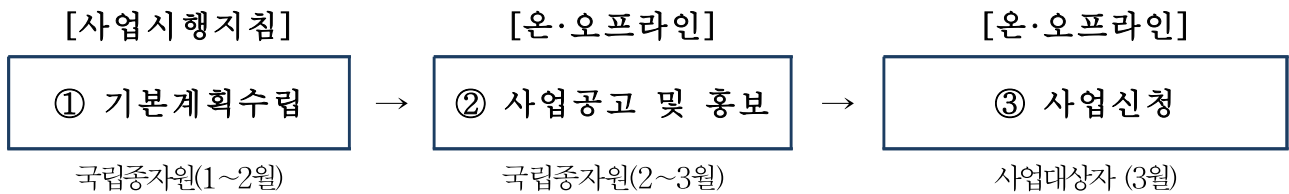
4. 지원형태

- 재원 :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
- 지원기준 : 국비 50%, 자부담 50%
 - 국내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%를 종자업체에 지원
- 사업예산 : 7,362백만원
 - * 사업비 배정은 ① 해외채종 품종의 국내전환, ② 수출 및 신품종 순으로 우선 배정 후 ③ 일반품종 신청물량 비율에 따라 배정

5. 지원한도액 기준

- 사업대상자별 지원한도액은 당해 각 사업예산의 10% 수준(7억)으로 적용 하되, 사업예산 운용 상황에 따라 지원한도액(10%)을 초과하여 지원 가능

1. 사업신청 단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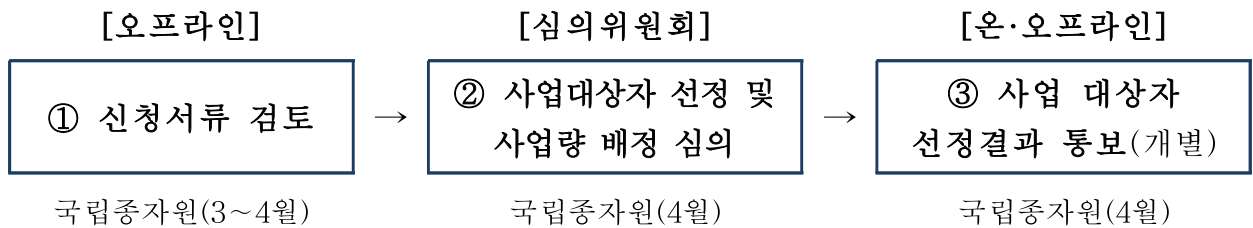
① 기본계획수립 및 ② 사업공고 및 홍보

- 국립종자원은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사업지침과 기본계획을 수립
- 사업공고는 국립종자원 누리집에 게시하고 종자협회 및 관련 종자업체 등에 홍보

③ 사업신청

- 신청기간 : 2024. 3. 1.(금) ~ 3. 31.(일)
 - ※ 신청기간 이후 접수된 건은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
- 제출서류 : 사업참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(증빙서류 포함) * 서식변경불가
 - 사업참여 신청서 [별지 제1호], 구비서류 1~5, 품종별 종자시료(3g) 등
 - ※ 채종계약서 제출은 사업대상자가 사업 신청기간 내 채종계약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농업인과 채종계약 완료 후 제출 가능하나, 현장실사를 위해 **4월31일까지**는 제출하여야 함.
- 신청방법 : 방문, 우편 또는 전자우편(e-메일)
 - 주소 :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119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(3층)
(우편번호 : 396690)
 - 전자우편(e-메일) : dllbodllb@korea.kr
 - ※ 우편은 신청마감일의 소인까지 유효, 전자우편(e-메일)은 신청마감일(~18시) 도착분에 한함
 - * 기타문의 :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담당(전화 : 054-912-0162)

2. 사업자 선정단계



① 사업신청자 제출서류 검토

- 사업 신청시 사업담당자는 신청자의 신청자격 및 요건, 구비서류 등을 면밀하게 검토

②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량 배정 심의

- 심의위원회 구성

- (구성)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외부전문가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구성

※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0조(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)에 따라 선정위원회 구성·운영

- 사업량 배정방법

- 실제 종자수매단가의 50% 지원

※ 종자업체와 농업인과의 채종계약 단가를 기준으로 함

- 사업대상자별 지원한도액은 당해 사업예산의 10% 수준(7억)을 적용하되, 사업예산 운용 상황에 따라 지원한도액(10%)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음.
- 우선배정(65%) : 1순위 해외채종 품종의 국내전환, 2순위 수출 및 신품종은 사업예산의 65% 범위* 내에서 우선배정

* 우선배정 비율은 예산 등 사업 운영상황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 가능

※ 신품종은 최근 3년('21~현재) 이내에 품종보호 등록된 품종이어야 함

- 일반배정(35%) : 사업대상자별 신청물량 비율에 따라 배정

- 선정 시 제재사항

- ① 범법 경력(금고 이상, 벌금, 과태료 등)
- ② 보조금관리법 등에서 정한 부정행위(허위자료 제출 등)
- ③ 동 사업에 대해 제재받은 경력
- ④ 불성실 행위(자료조사 및 현장실사 등에 비협조 등)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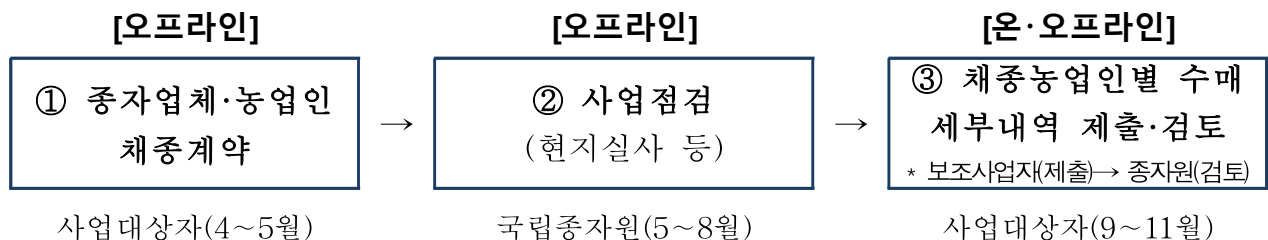
- (i) 법규위반 제재 : 종자산업법, 식물신품종보호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감액배정 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
- (ii) 「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른 제재 : 전년도 집행마감, 정산보고서 제출 및 정보공시 등 기한 미준수 시 시정명령, 보조금삭감, 명단공포 등의 제재
- (iii) 부정행위 및 사업 미이행 등 제재 : 사업의 허위신청, 증빙서류 미제출 등 발생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회수 등의 제재

* 세부사항은 [붙임1] 법규 및 지침위반 제재기준 참고

③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(개별)

-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비 배정 결과(배정 세부내역)를 개별통보(공문 등)

3. 사업시행단계



① 종자업체·농업인 간 채종계약

- 사업대상자는 신청량 기준으로 농업인과 채종계약 체결 (표준계약서 또는 자체계약서 이용)
 - 계약서에는 업계 통상계약서상의 중요·기본사항을 포함하여야 함
- * 작물명, 품종명, 계약량, 계약단가, 채종농업인 정보 등

- (i) 사업대상자(업체 대표)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 및 임직원과의 채종 계약 불가
- (ii) 채종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하여야 함
- (iii) 종자업체와 다수 채종농업인을 대리한 채종중간관리자간 계약 인정
 (단, ① 업체↔채종관리자 간, ② 채종관리자↔채종농가 간 계약서 모두 제출)
 ※ 계약서 작성시 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,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, 5배의 제재부과금과 모든 농림축산식품 보조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”을 명시

- 사업대상자는 채종계약 체결 후 제출기한 내 채종계약서 제출(~4월31일까지)
 - 계약서 제출 후 계약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종자원장에게 변경된 계약서를 2주 이내 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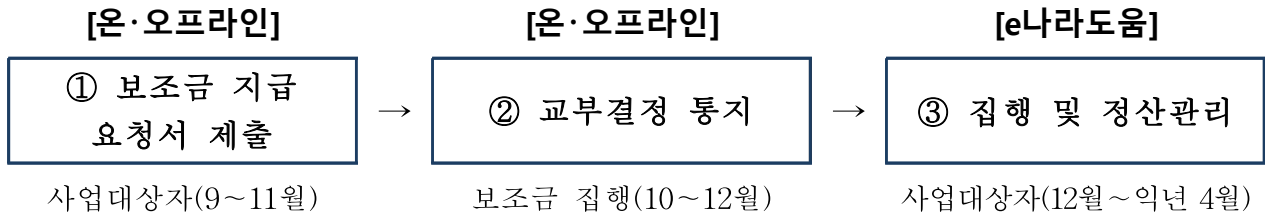
② 사업점검(현장실사 등)

- 채종포장 현장(업체 또는 채종농가)실사는 계약농업인의 10% 내외 범위에서 무작위로 선정
 - 점검시기 : 5월~8월(*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)
 - 점검사항 : 파종(정식)여부, 생육상황, 채종농가 정보 일치여부 등 점검
- ※ 사업점검을 위한 현장실사 시 사업대상자는 현장에서 채종농업인, 채종품종, 채종포장 위치·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제출, 필요시 육묘장, 수매현장, 종자보관 장소, 사업체 등에 대해서도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
- 유전자분석(DNA검정 등)을 통한 사업신청 품종의 진위여부 검정
 - 시료채취 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현장실사 시 채종포장에서 직접 시료채취 후 표준시료(신고종자 등)와 같이 유전자분석(DNA 검정) 실시
 - * 시료채취 기준은 「국립종자원 고시 종자검사요령 제3장 종자검사(시료추출)」에 따르며, 신품종 등의 이유로 표준시료 확보가 어려울 경우 채종완료 된 당해년도 내 제출

③ 채종농업인별 수매 세부내역[별지 제3-1호] 제출·검토

- 사업대상자는 채종종자를 수매완료 후 신청품종별·채종농업인별 상세 수매 사항(작물명, 품종명, 수매량, 수매단가, 총수매비 등)을 기재하여 제출하고, 종자원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·보완함
- 이상기후, 작황 등 채종재배 상황에 따라 작물(품종)별로 배정된 지원액(물량)의 과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대상자는 채종농업인별 세부내역에 이를 기재하고, 기 배정된 지원액(물량) 내에서 타 작물(타 품종)으로 변경 조정하여 제출할 수 있음

4. 정산 및 사후관리



① 보조금 지급요청서 제출

-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채종농업인별 수매 세부내역[별지 제3-1호] 검토 결과 문제가 없는 경우 사업대상자는 지급요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e-메일 및 우편을 통해 보조금 신청기한 내 교부 신청(신청기한: 12월 6일 금요일)

○ 제출서류

- 보조금지급 요청서[별지 제3호],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, 채종농업인별 수매 세부내역[별지 제3-1호], 수매대금 지급증빙서류*

* 종자업체가 채종농업인에게 수매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

② 교부결정 통지

- 국립종자원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보조금지급 요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서 개별 통지 * [붙임2] 보조금 교부조건 참고

- 사업대상자별 배정된 보조금이 채종작황 영향 등으로 기 배정액을 전액 교부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액을 기 배정액보다 초과 수매한 타 사업대상자에게 실 수매액 한도 내에서 추가배정*할 수 있음

* 추가배정 방식은 잔액 상황에 따라 타 사업대상자의 초과수매액 전체 또는 초과수매액 비율別に 따라 배정

③ 집행 및 정산관리

-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집행 후 집행마감, 정산보고서 제출 및 정보공시를 하여야 함
 -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(e나라도움)을 통하여 사업참여 회계연도 내 집행마감 및 익년 2월까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, 정보공시 공시대상은 반드시 정보공시 실시
 - * (정산보고서 검증) 보조금 1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 등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하여야 함
 - * (정보공시)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이상인 보조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e나라도움을 통해 정보 공시하여야 함
- 필요시 신규 사업대상자 및 신규담당자를 대상으로 「e나라도움」 시스템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보조사업자 교육 추진
- ※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의 「보조사업자 정산기초실습교육」 개별 혹은 단체교육 가능

5.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

-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: 보조금법 제30조
 -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 - 법령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종자원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
 -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-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: 보조금법 제33조
 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
 -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 -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
- 보조사업 수행배제 및 교부 제한(5년이내 범위) : 보조금법 제31조의2
- 제재부가금(총액의 5배 이내) 및 가산금 부과·징수 : 보조금법 제33조의2
- ※ 근거: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, 제31조의2, 제33조, 제33조의2

법규 및 지침위반 제재기준

1. 목적 :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정책(사업)의 평가 기준을 제정하여 사업 공공성 및 내실화 제고

2. 법규 및 지침위반 제재 기준

가. 일반기준

- ‘종자산업법’ 및 ‘식물신품종보호법’ 위반
- 업체별 위반 횟수(처분 또는 판결)를 기준으로 사업비(량) 배정에 적용
- 지원업체 대표 및 소속직원이 업체운영과 관련하여 법규위반을 한 경우에도 동일 제재기준을 적용
- 법규위반의 내용으로 보아 정황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‘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심의위원회’ 심의를 거쳐 그 처분을 경감 할 수 있음
- 보조금 교부 전 부정행위 발견 시 사업비배정 전부 또는 일부 취소 횟수에 따른 제재기준 설정(‘23년 신규)

나. 개별기준

위반사항		위반 횟수별 제재 기준		
		1회	2회	3회
금고형이상		지원제외(1년간)	지원제외(3년간)	영구제외
벌금		정상배정금액의 25% 감액	정상배정금액의 50% 감액	지원제외 (3년)
기소유예, 선고유예		정상배정금액의 15% 감액	정상배정금액의 30% 감액	지원제외 (1년)
과태료	100만원 이상	정상배정금액의 5% 감액	정상배정금액의 15% 감액	정상배정금액의 45% 감액
	100만원 미만	경고	정상배정금액의 10% 감액	정상배정금액의 30% 감액
사업비 배정의 전부취소		정상배정금액의 25% 감액	정상배정금액의 50% 감액	정상배정금액의 75% 감액
사업비 배정의 일부취소		정상배정금액의 15% 감액	정상배정금액의 30% 감액	정상배정금액의 45% 감액

* ‘24년도 사업량 배정 시 최근 3년 이내에 위반사례에 대해 적용, 같은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제재는 불가하나 최근 3년 이내의 위반사항에 대한 누적 적용은 가능

※ 위반업체 중 ‘재발방지대책’을 마련하고 시행한 경우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감액(감면)될 수 있음

보조금 교부조건

- 가. 보조사업자 등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과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, 「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」,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,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의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. 「보조금법」 제18조
- 나.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(보조금통합관리망)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을 관리하여야 합니다. 「보조금법」 제26조의2
- 다. (실적보고)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, 국립종자원장으로부터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을 통해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**실적보고서를 제출**하여야 합니다. 「보조금법」 제27조
- 라. (정산보고서 검증) 농식품 보조금 1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**정산보고서 검증** 후 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. 「보조금법 시행령」 제12조의2
- 마. (정보공시) 같은 회계연도 중 **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** 보조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e나라도움을 통해 아래의 사항을 **공시**하여야 합니다. 「보조금법」 제26조의10

1. 사업신청서
 2. 보조사업자의 수입 및 지출내역
 3. 정산보고서
 4.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
 5. 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
 6. 재무재표 및 결산서
 7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청장이 정하는 사항
- ※ 보조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,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는 공개가 되지 않도록 조치

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참여 신청서

* 서식변경 불가

	업체명	대표	담당자						
			부서	직책	성명	전화, 팩스 및 이메일			
1. 신청인						Tel. Fax. Mail			
	종자업 등록번호		제00-000-00-00호(채소)			등록일 년 월 일			
2. 업체정보	(본사 주소) : 우편번호 포함 도로명 주소지 표기								
	(종업원 수) : 계약직(1년 이상) 포함, 일용아르바이트 등 임시직을 제외한 종업원 수 표기								
3. 신청내용	(최근 3년 매출액) : ('21) 100억 ('22) 110억 ('23) 113억								
	(연구소 명칭·소재지, 연구인력 수) : 연구인력은 품종개발 관련 인력 예시) 육종연구소, 안성·조치원 2개소, 각 5명								
	작물명	품종명	신청량(kg)	계약단가(원)	총계약금액(천원)				
	예) 무	○○○	200	40,000	8,000,000				
	예) 호박	△△△	100	100,000	1,000,000				
위와 같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며, 사업대상자로 선정 시 사업공고 내용 등 관련 지침에 따라 동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. 2024년 월 일 신청자 : (업체명 및 대표자직 성명, 서명) 국립종자원장 귀하 【 구비서류 】 1.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신청 품종 현황 2. 신청량 세부내역 3. 신청작물에 대한 국내·해외 3개년 채종실적 4. 채종농업인 확보현황 5. 채종계약서 및 [별첨1] 6. 품종별 종자시료(3g) 7. 기타 증빙서류(국내전환, 수출·신품종 증빙 등 해당하는 경우 제출)									

【 작성방법 : 별지 제1호 서식 】

1. 신청인

- ① 업체명 : 신청 업체명 기입(○○종료)
- ② 대표 성명 : 대표자 성명을 기입
- ③ 담당자 : 신청업체의 사업담당자 정보를 기입

2. 업체 정보

- 본사 주소 : 우편번호 포함 도로명 주소지 표기
- 종업원 수 : 계약직(1년 이상) 포함, 일용·아르바이트 등 임시직을 제외한 종업원 수 표기
- 최근 3년 매출액 : '21~'23년도 매출액
 - * 예시) ('21) 110억 ('22) 100억 ('23) 120억
- 연구소 명칭·소재지, 연구인력 수 : 연구인력은 품종개발 관련 인력
 - * 예시) 육종연구소, 안성·조치원 2개소, 각 5명
- 채종담당 정규직원 : 채종담당 부서와 담당자 수 모두 표기, 위탁인 경우 위탁업체 표기
 - * 예) 생산부·홍성 채종소, 각 5·3명, 없음(○○社 위탁)

3. 신청 내용

- 세부 사항은 구비서류([별첨1] ‘세부 계약내역’)에 표기

【 작성방법 : 별지 제1호 구비서류(1~5) 】

1.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신청 품종현황

(단위 : kg, m², 천원)

작물명	품종명	신청 물량	계약 단가	총 계약 금액	육성 년도	생산수입 ·판매신고	품종보호 출원	③품종보호 등록		②수출 실적 (계획)	①해외채종 국내전환		
								일자	보호권자		국가	해외 채종량	국내 전환량
예시) 무	000	100			2012		'12.12.25			'19년중국	인도	300	100
예시) 고추	△△△				2012		'12.12.25	'13.2.20	00종묘	'20년인도			
예시) 수박	□□□				2014	'15.2.3	-	-	-	-			
예시) 배추	□△△				2018	'18.5.10	'18.11.21	'19.4.15	00종묘	-			

* 신청 품종 중 [첨부서류]는 아래의 <품종별 증빙자료 제출 안내>를 참고하여 제출

* ① 해외채종 국내전환의 경우 국내전환 실적에 상관없이 해외채종이 있는 경우 '해외채종량' 기재

<품종별 증빙자료 제출 안내>

구분	품종	증빙자료
우선 배정	① 해외채종 국내전환 품종	최근 3년 이내('21년~현재) 해외에서 채종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현지 채종계약서, 수입요건확인서(또는 화물송장(INVOICE))
	② 수출품종	[필수] 육종계보도, 육성자 정보 * 국내육성 품종 확인용 ①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: 수출신고필증, 송장 등 택1 ② 당해연도 수출계획이 있는 경우 : 수출계약서, 주문서 등 택1 ※ 수출계획 서류 제출 건에 대한 수출실적자료를 당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제출 해야하며, 부정행위로 배정받은 것이 확인 될 경우 차년도에 배정액 감액 등 조치할 수 있음
	③ 신품종	최근 3년 내('21년~현재) 품종보호권등록증만 해당
일반 배정	④ 일반품종	신청품종 품종보호 출원번호 통지서, 품종보호권등록증 및 신청 품종 생산판매 신고증명서 중 택1

2. 신청량 세부내역 (엑셀로 제출)

작물명	품종명	신청량(kg)					수출 국가	해외채종 국가
		계	국내 전환	신품종	수출	내수		
고추	○○○	600		(600)	500	100	인도	
	△□	200		(200)	200	-	인도	
	□□	300	300	-	-	-		중국
	△△△	500		-	-	500		
	△△○	450		(450)	-	450		
	□□□	1,000		-	-	1,000		

* 신품종이 수출물량, 내수물량과 중복될 경우 신품종 신청량을 기재하되 합계에서는 제외

3. 신청작물에 대한 국내·외 3개년 채종실적

	년도	작물	품종수	물량(kg)	지역	수매가격범위
국내 채종 실적	2021	예시) 무	5	1,000	경기용인 경북포항	20~30천원/kg
	2022					
	2023					
국외 채종 실적	2021	예) 무	2	1,000	중국	20~30\$/kg
	2022	고추	1	500	태국	20~30\$/kg
	2023	배추	1	50	인도	100~120\$/kg

* 직전 3년 실적을 기입하되 채종실적이 없는 연도의 경우, 미채종 연도를 제외한 3년간의 채종실적을 기입

4. 채종농업인 현황(작물별 채종계약 농가 수)

번호	작물	지역	농업인수	비고
1	예) 배추	충남 공주	20인	
2				

* 위탁업체 수가 아닌 실제 채종계약 농가 수를 정확하게 기입할 것

5. 채종계약서

- 사업대상자는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제출
 - 계약서에는 통상계약서상의 중요·기본사항(작물명, 품종명, 계약량, 계약단가, 채종농업인, 포장소재지 주소 등)을 포함
 - 품종명칭 기밀유지 등의 이유로 계약서에 작성이 어려운 경우 기호로 표기
- 계약서를 요약한 엑셀 파일 제출[별첨1]

* 채종계약서에 품종명을 기호로 표기한 경우, [별첨1]에 품종명과 생산기호를 모두 작성할 것

[별첨1] 세부 계약내역 (엑셀로 제출)

번호	작물	품종명	생산기호	신청량(kg)	배정량(kg)	계약량(kg)	계약면적(m ²)	단가(원/kg)	총계약금액(원)	국고보조금(원)	업체부담금(원)
1	무	00무		300	300	300	1,000	50,000			
2	무	△□ 무									

채종농업인명	전화번호	출생년도	포장소재지(지번포함)	은행	계좌번호	예금주	비고(특이사항 등)
000			경북 00시 00로	농협	0000-00000	000	

* 출생년도는 채종농업인의 연령대 파악 목적이며, 포장소재지는 현지실사 시 채종포장 점검을 위한 사항으로 품종별 농가의 포장소재지가 여러 곳일 경우, 일괄 기입할 것

보조금 지급 요청서

귀 기관의 사업으로 진행한 채종재배의 종자수매가 완료되어 아래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.

☐ 사업명 :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

☐ 요청자

○ 주소 : 경기도 평택시 00면 00리 123-2

○ 성명 : 00 종묘 대표 000

○ 사업자등록번호 :

○ 계좌번호 : 00 은행 000-00-000-00 (예금주 : 000)

*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 구분하여 표기

○ 통장사본, 사업자 등록증 사본 : 붙임

☐ 보조금 지급 신청액

작물	품종	배정량 (kg)	수매량 (kg)	단가 (원/kg)	수매비 (원)			농업인수
					합계	보조금	자부담	
무	00무	500	600	30,000	18,000,000	7,500,000	10,500,000	10
배추								
합계	0품종							

☐ 보조금 잔여예산 발생 시 추가 배정 동의 여부 : ☐ 예 ☐ 아니요

☐ 기타

1. 채종농업인별 수매 세부내역 [별지 제3-1호 서식]

2. 수매대금 지급증빙서류(업체 → 채종농업인, 이체확인증 또는 거래내역확인증 등)

00 종묘 대표 000 (직인)

[별지 제3-1호 서식] 수매 세부내역

채종농업인별 수매 세부내역 (엑셀로 제출)

번호	작물명	품종명	생산기호	배정량 (kg)	계약량 (kg)	수매량 (kg)	변경승인량 (kg)	단가 (원/kg)	총수매비 (원)

국고보조금 (원)	업체부담금 (원)	농업인명	전화번호	주소	은행	계좌번호	예금주	비고

* 배정량 : 국립종자원으로부터 배정 통보받은 물량
 * 계약량 : 실제 농가와 채종 계약한 물량
 * 수매량 : 채종농가가 수매한 물량(실제 지급한 채종비 물량)
 * 변경승인량 : 배정물량을 기준으로 실제 채종비 지원이 가능한 물량
 * 주소 : 농가와 채종계약 시 계약서 상 주소 기입
 * 비고 : 채종중간관리자, 지급내역 변동사항 등을 기재